

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2009. 9. 15.
행정소방위원회

1. 수정이유

상위법령인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에 따라 통합관리기금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하고,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기금의 존속기한 변경(안 제18조)
 - 2019년 12월 31일까지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
 - 단서 조항 삭제
- 명확한 용어의 표현을 위한 자구수정(안 제10조제2항)

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0조제2항 중 “통합기금관리관이 하며”를 “통합관리 기금관리관이 되며”로 한다.

안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8조(기금의 존속기한)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개정안	수정안
<p>제10조(위원회의 구성)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통합기금관리관이 <u>하며</u>,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제18조(기금의 존속기한)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<u>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10조(위원회의 구성)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통합기금관리관이 <u>되며</u>,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제18조(기금의 존속기한)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<u>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/u></p>